

	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	문서번호	3-4-9		
		제정일	2001. 11. 10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5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 구성원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대학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‘성희롱’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2. 상대방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

② ‘성폭력’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총장과 소속 구성원에게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, 대학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·성폭력을 포함한다.

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,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.

제4조(성고충상담실) ① 규정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고충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을 둔다. 상담실장은 본 대학의 학생처장으로 하며, 상담원은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과 고충상담원 등으로 한다.

②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2.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3.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 및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5.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

③ 상담실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
	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	문서번호	3-4-9		
		제정일	2001. 11. 10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5	관리 부서	학생처

- 2.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- 3.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
 - 4.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- 5.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, 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
 - 6.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
- ④ 상담실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상담실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대학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)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총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대학의 총장이 되고,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, 성폭력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(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고충의 처리절차와 내용) ①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실에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- ③ 위원회는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업무 추진을 위해 대학의 각 부처, 학년·반 지도교수, 보직교수, 교수회는 협조하여야 한다.
- ⑥ 제 ④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- ⑦ 위원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
	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	문서번호	3-4-9		
		제정일	2001. 11. 10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3/5	관리 부서	학생처

제7조(총장의 임무)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.

②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8조(비밀의 유지)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단, 공공기관의 요청시에는 무기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규정되지 않은 내용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‘양성평등기본법령’과 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’에 준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	문서번호	3-4-9		
		제정일	2001. 11. 10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4/5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규정	문서번호	3-4-9		
		제정일	2001. 11. 10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5/5	관리 부서	학생처

<제 1호 서식>

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								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청인	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확인	
		성명	소속부서				상담실장	총장

<제 2호 서식>

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 처리 신청서					
접수일	20 . . .		담당자	(서명)	
당사자	신청인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대리인 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행위자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상담 (신청) 내용	※ 육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기록				
요구사항 ※조사를 원하는 경우	1. 성희롱(성폭력)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() 4. 기타()				
처리결과					
※ 관련 자료 첨부					